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-517호

도시관리계획(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
결정(변경)(안) 재열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42호(2023.10.19.)로 결정된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,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-3285호(2025.11.20.)로 열람공고하고, 2026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6.01.28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2월 19일
서울특별시장

가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

나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본청 11층 공공개발담당관(☎02-2133-8357)
동대문구청 9층 도시계획과(☎02-2127-4396)

다. 열람내용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 주요내용

㉠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(안)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: 변경

구분	도면표시번호	구역명	위 치	면적(㎡)		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-	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	장안동 283-1 일원	49,987.9	감) 22,340.5	27,647.4	최초결정 서고 제2023-442호 (2023.10.19.)

2. 토지이용 및 시설,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 : 생략(열람도서 참조)

②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(안)

1. 특별계획구역 결정 : 변경없음

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: 변경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

구분	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18,417.7	-	18,417.7	100.0	-
주거지역	준주거지역	6,301.3	증) 7,465.8	13,767.1	74.7	-
상업지역	근린상업지역	6,522.8	감) 6,522.8	-	-	-
	유통상업지역	5,593.6	감) 943.0	4,650.6	25.3	-

나. 용도지구 결정 : 해당없음

다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: 생략(열람도서 참조)

3. 획지 및 건축물 등,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 : 생략(열람도서 참조)